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장옥미 소유물건
(2025타경20143)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신기복

감정평가서번호: Y250121-01-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 영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 상 훈

이 상 훈



감정평가액	이천오십일만이백오십원정 (₩20,510,25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신기복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매5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장옥미 (2025타경20143)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1.31	2025.01.30 ~ 2025.01.31	2025.02.0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50	토지	150	124,000	18,600,000
(제시외 건물)	(약 44.9)	제시외 건물	약 44.9	-	1,910,250	
	이	하	여	백		
합 계						₩20,510,2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상리 소재 '산다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 기준가치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 감정평가는 시장가치(Market Value)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합니다.

4. 감정평가 실시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시조사기간

본건 실시조사기간은 2025년 0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31일입니다.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01월 31일로 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으로서, 본건 감정평가는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6. 감정평가방법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식(방법)에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및 적산법 등),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등),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 가 라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사용료를 포함)를 산정하는 ‘적산법’ 등이 있습니다.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 라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실증적인 교환측면’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임대료)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 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수요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익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본건 감정평가액 결정방법

가.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며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나.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바, 본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과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다.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결정방법

본건 토지는 상기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각각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적정성을 검토하여 토지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8. 그 밖의 사항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첨부 ‘지적개황도’와 같이 인접한 타인 토지상에 개설된 도로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 토지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명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등이 요구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일부 지상에 첨부 ‘사진용지’와 같이 일부 벽체만 남아있는 블록조 구조물이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첨부 ‘지적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ㄴ)이 소재하며 이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을 토지가격 비교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외건물(ㄱ,ㄴ)(첨부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참조)은 구조·용재·시공수준·관리상태 등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개략적인 실측방법으로 진행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1. 본건 토지 개요

일련 번호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접면	형상 및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의령읍 상리 467-1	대	150	주거용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평지	34,4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 ①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④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이 있을 것.

2) 비교표준지 선정

상기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공시기준일: 2025.01.01]

비교표준지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공시지가(원/㎡)	비고
A	의령읍 상리 479-2	대	357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지	37,4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1) 시점수정 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 또는 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2) 지가변동률

지역	용도지역	비고
경상남도 의령군	계획관리	2024.12.01 ~ 2024.12.31 : 0.055

3) 시점수정치 산정

산정기간	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고
2025.01.01 ~ 2025.01.31	0.055 (1.00055)	(1 + 0.00055 * 31/31) ≒ 1.00055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라. 지역요인의 비교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는바,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마. 개별요인의 비교

(후면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비교항목

- 주택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비교치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기호	개별요인 비교						누계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	A	0.94	1.00	1.00	1.02	1.00	1.00	0.959
대상토지는 표준지와 비교시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하나 가로조건(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의 보정 필요성과 근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수준은 현실적인 적정시세와 격차를 보이는 바, 대상토지 및 비교표준지와 비교가능성 있는 인근의 평가사례, 거래사례 등을 통해 적정 시세수준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2003다 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 (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를 인정하고 있는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합니다.

2) 인근지역 가격자료(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등]

기호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토지면적 (㎡)	지목	용도지역	평가목적	평가단가 (원/㎡)	기준시점	비고
1	의령읍 상리 ***-*	744	대	계획관리	법원경매	120,000	2022.01.17	-
2	의령읍 상리 ***-*	476중 431	대	계획관리	담보	121,000	2022.03.25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 방식

$$\begin{aligned}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의 가격}}{\text{표준지공시지가 기준시점 가격}} \\ &= \frac{\text{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end{aligned}$$

나) 그 밖의 요인 보정 사례 선정

인근지역의 기준시점 당시 적정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서, 대상토지 및 비교표준지와 용도 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 기호	사례선정
A	1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사례 1	120,000	1.03003	1.000	1.045	129,166	3.452		
표준지 A	37,400	1.00055	-	-	37,421			
산정내역	시점수정	경상남도 의령군 계획관리 2022.01.17.~ 2025.01.31.					1.03003	
	지역요인	사례와 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상호 대등합니다.					1.000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계
		1.10	1.00	1.00	0.95	1.00	1.00	1.045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비교시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하나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사례 기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고려하되, 본건과 비교 가능한 인근지역 지가수준, 최근 부동산경기의 추세 및 전반적인 경기상황,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 고
A	3.45	-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출 및 결정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정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기호	공시지가 (원/㎡)						
1	A	37,400	1.00055	1.000	0.959	3.45	123,808	124,000

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사정면적 (㎡)	토지단가 (원/㎡)	토지가액 (원)	비고
1	150	124,000	18,6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거래사례의 선정

1) 거래사례 선정기준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이용상황 및 규모, 형상 등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2) 사례 선정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용도지역 /지목	토지 (㎡)	건물 (㎡)	토지 거래단가 (원/㎡)	총거래금액(원)		거래시점	비고
						토지거래가액(원)	건물거래가액(원)		
a	의령읍 상리 ***	계획관리 /대	491	95.02	124,461	130,000,000	61,110,500	2021.09.09	선정
b	의령읍 상리 **	계획관리 /대	298	-	75,503	22,500,000	22,500,000	2022.06.03	-

※ 상기 사례는 건물을 포함한 사례로서, 배분법을 통해 건물(추정)가격을 별도 산정함.

- 총거래금액 : 130,000,000 원,

- 일반목구조, 주택, 사용승인일 : 2010.07.30

- 건물(추정)가격 : @1,000,000 원/㎡ × 95.02 ㎡ × 29/40 ≒ 68,889,500

※ 상기 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나. 사정보정

본 거래사례는 적정한 시세를 반영한 거래사례로서 사정보정이 필요치 않습니다.(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지역	용도지역	기간	변동률(%)	시점수정치
경상남도 의령군	계획관리	2021.09.09.~ 2025.01.31	3.779	1.03792

라. 지역요인의 비교

본건 토지는 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는바,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마. 개별요인의 비교

일련 번호	사례 기호	개별요인 비교						누계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대상토지는 사례와 비교시 상호 대등합니다.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출 및 결정

일련 번호	사례단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124,461	1.000	1.03792	1.000	1.00	129,181	129,000	-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사정면적 (㎡)	토지단가 (원/㎡)	토지가액 (원)	비고
1	150	129,000	19,35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가액의 결정

가. 시산가액(단위:원)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 고
1	18,600,000	19,350,000	-

나. 합리성 검토

상기와 같이 시산가액이 각각 산출되었는 바, 각 방법에서 적용된 요인비교 및 가액 보정작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본 감정평가에 적용할 토지가액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1	150	124,000	18,600,000	-
제시외 건물	(ㄱ),(ㄴ)	44.9	-	1,910,250	-
합 계				20,510,250	-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 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상리	467-1	대	계획관리지역	150	150	124,000	18,600,000	제시외건물 소재로인해 영향받는 토지가액: 16,470,000
	소 계							₩18,600,000	
(ㄱ)	"	467-1 위지상	주택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약 40)	약 40	45,000	1,800,000	600,000 x 3/40 관찰감가
(ㄴ)	"	467-1 위지상	창고등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약 4.9)	약 4.9	22,500	110,250	300,000 x 3/40 관찰감가
	소 계							₩1,910,250	
	합 계							₩20,510,25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상리 소재 '산다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부근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동측으로 인접한 타인 토지상에 개설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ㄱ)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약 40㎡
- (ㄴ)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등) : 약 4.9㎡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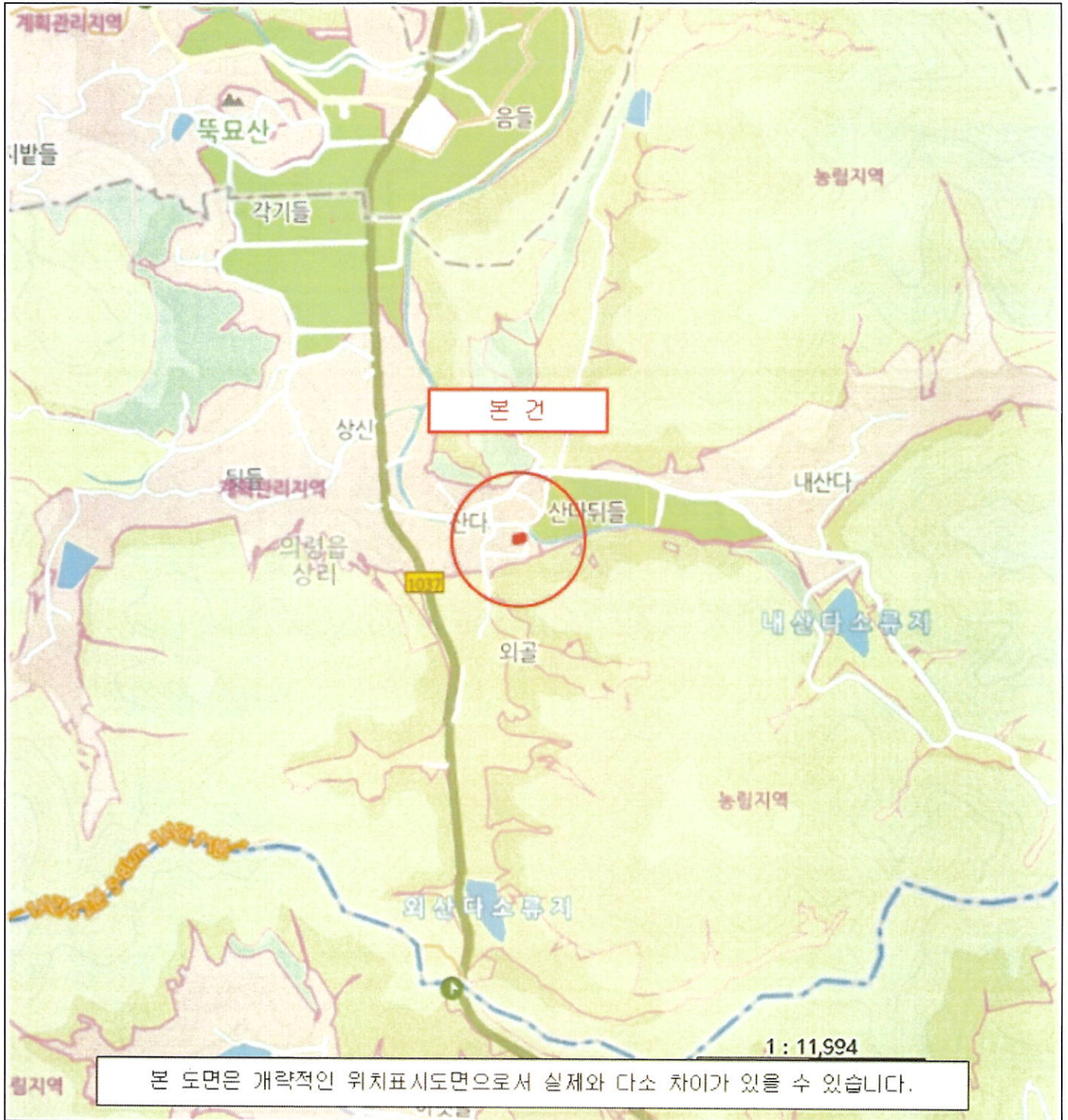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인접 토지와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명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등이 요구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상리 467-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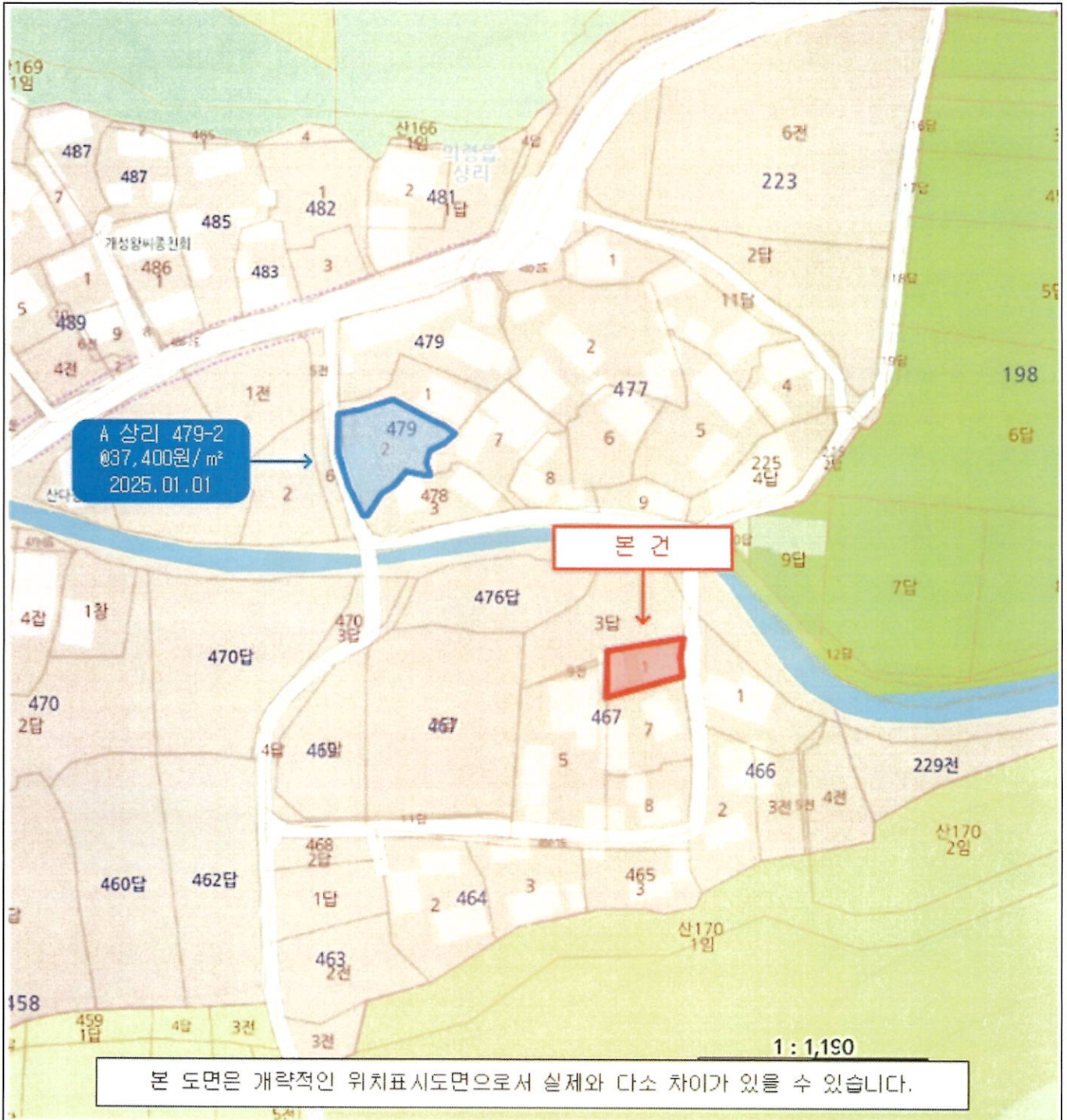


본 도면은 개략적인 위치표시도면으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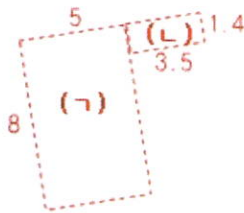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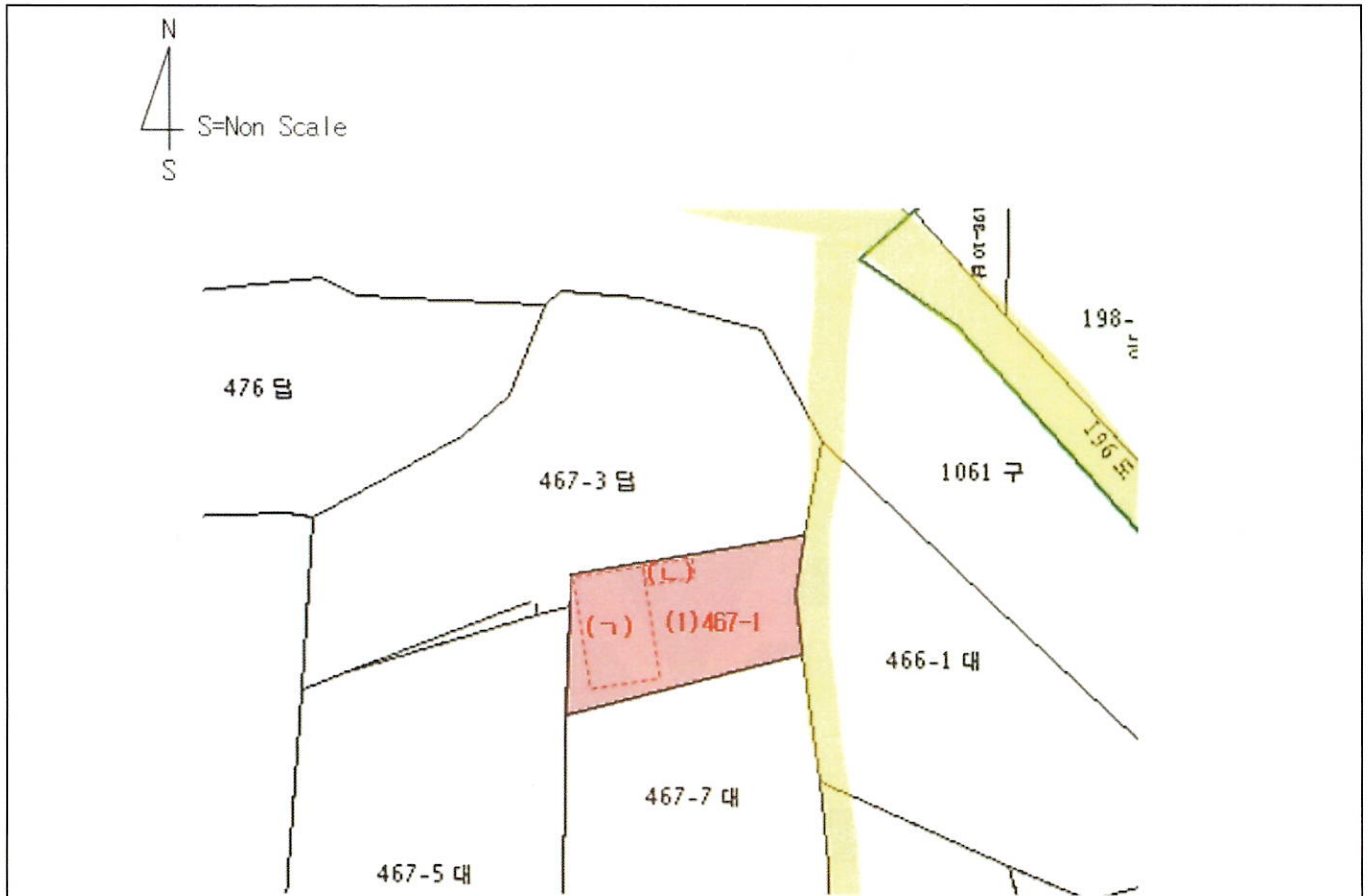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상리 467-1번지
-----	-------------------------



지 적 개 황 도



<제시외건물>
 (ㄱ)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약 40㎡
 (ㄴ)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등) : 약 4.9㎡

본 도면은 현장조사에 의해 표시한 개략적인 개황도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 례		본건토지		하천 및 소하천		감정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선		감정평가건물 1층		감정평가제외건물(등기)
		계획도로선		감정평가건물 2층		감정평가제외건물(미등기)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제시외건물(ㄱ)

사 진 용 지



제시외건물(ㄴ)



블록조 구조물

사 진 용 지



본건 및 주변환경



본건 및 주변환경